# 투자일임계약서

_____(이하 "고객"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꿈꾸는투자일임(이하 "회사"라 한다)은 고객의 투자일임재산(이하 "투자일임재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고객이 계약기간 동안 회사로부터 계속적으로 투자일임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회사는 고객의 투자일임재산에 대하여 투자일임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은 그 대가로 회사에 투자일임수수료를 지급한다.

**제2조 (투자대상)**

① 투자대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3조에 정의된 금융투자상품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본시장법 제4조제1항의 증권(국내증권 및 해외증권을 포함한다)
2. 그 밖에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투자일임 투자대상자산으로서 고객과 회사가 사전에 합의한 금융투자상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에 따라 회사가 실제로 운용하는 대상은 [별지 1]에 기재한다. 회사가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을 편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고객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 변경되는 위험등급을 고객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신용거래·미수거래·차입을 이용한 투자는 하지 아니한다.

**제3조 (투자일임의 범위 및 투자방법)**

① 고객은 회사에 투자일임재산의 투자전략 수립 및 자산배분, 포트폴리오 구성 및 분석, 투자대상자산의 가치판단, 금융투자상품의 종류·종목·수량·가격, 매매의 구분·방법·시기, 그 밖에 투자일임서비스와 관련된 사항을 일임하고, 회사는 고객을 위하여 투자를 행한다.

② 회사는 기업방문 및 투자관련 자료를 활용하여 투자대상의 가치와 투자환경을 판단하는 기본적 투자(Fundamental Investment)를 원칙으로 한다. 운용전략, 종목 선정, 자산배분비율 및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은 정기적인 운용전략회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분산투자 비율에 별도 제한이 없어 소수 종목에 집중 투자될 수 있으며, 회사는 원금이나 일정 수익률을 보장하지 아니한다.

**제4조 (투자일임수수료)**

① 회사는 투자일임서비스의 대가로 고객으로부터 성과수수료를 수취하며, 기본수수료는 수취하지 아니한다. 성과수수료의 요율 및 세부조건은 [별지 1]에서 정한다.

② 성과수수료는 [별지 1]에서 정한 기준수익률(이하 "허들레이트"라 한다)을 초과하는 수익에 대하여 하이워터마크(High Watermark, 이하 "HWM"이라 한다) 방식으로 산정한다. 허들레이트 연 6%는 수수료를 계산하는 기준일 뿐 회사가 보장하는 수익률이 아니다. KOSPI 등 시장지수는 참고용이며, 시장지수보다 수익률이 낮아도 본 조의 요건을 충족하면 성과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

③ 정산일은 다음과 같다. 최초 평가기준일은 [별지 1]의 실제 운용개시일로 하며, 이 날에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중간정산일은 계약기간 내 매년 6월 30일, 최종정산일은 계약종료일(중도해지 시에는 해지일)이다. 최초 정산기

간은 운용개시일부터 첫 정산일까지(양쪽 날 포함), 이후 정산기간은 직전 정산일 다음 날부터 이번 정산일까지로 한다. 중간정산일과 최종정산일이 같은 날이면 한 번만 정산한다.

④ 정산기간이 1년이 아닌 경우 허들레이트는 (1+연 6%)^(운용일수÷연 기준일수)−1로 복리 환산한다. 연 기준일수는 정산기간에 2월 29일이 포함되면 366일, 그 밖에는 365일로 한다.

⑤ 성과수수료는 각 중간정산일 및 최종정산일에 이전 정산기간분을 후취하며, 다음 순서로 계산한다.

1. 기간 초 HWM: 최초 정산기간은 운용개시일의 평가액이고, 이후에는 직전 정산에서 정한 "다음 기간 HWM"이다.

2. 기준금액: 기간 초 HWM에 기간 허들레이트를 적용한 금액에, 기간 중 입금액은 더하고 출금액은 뺀다. 입금액과 출금액에는 각각 이체일부터 정산일까지의 일수만큼 허들레이트를 적용한다.

3. 초과수익: 정산일 평가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이다. 0보다 작으면 0으로 한다.

4. 성과수수료: 초과수익 × 성과수수료율. 10,000원 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당기 운용손익(정산일 평가액 − 기간 초 평가액 − 입금합계 + 출금합계)이 0 이하이면 성과수수료는 없다.

5. 다음 기간 HWM: 기간 초 HWM에 기간 중 입금액을 더하고, 출금이 있으면 출금 직전 평가액에 대한 출금 비율만큼 줄인 금액(입출금 조정 HWM)과 정산일 평가액 중 큰 값이다.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은 기간이라도 평가액이 더 높으면 다음 기간 HWM은 그 평가액이 된다.

[계산식] 기준금액 = 기간 초 HWM × (1+h)^(D÷Y) + Σ 입금액 × (1+h)^(잔여일수÷Y) − Σ 출금액 × (1+h)^(잔여일수÷Y) / 성과수수료 = max(0, 정산일 평가액 − 기준금액) × 성과수수료율 (10,000원 미만 절사) / 다음 기간 HWM = max(입출금 조정 HWM, 정산일 평가액). h는 연 허들레이트, D는 정산기간 일수, Y는 연 기준일수이다. 기간 중 입출금의 처리와 계산 예시는 [별지 2]에 따른다.

⑥ 회사는 자본시장법 제9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2에서 정하는 성과보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성과수수료를 수취한다. 성과수수료를 적용하는 계약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비하여 운용인력이 높은 위험을 추구할 유인이 있으므로 고객은 더 높은 투자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⑦ 성과수수료에는 회사가 제공하는 일임서비스, 운용성과측정 및 그 밖의 계좌관련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모두 포함한다. 다만 회사 외의 제3자에게 지급하는 위탁매매수수료, 세금 등의 비용은 고객이 부담한다.

⑧ 고객은 회사로부터 성과수수료 청구서와 산출내역을 받은 날부터 7영업일 이내에 [별지 1]의 회사 명의 계좌로 직접 납부한다. 회사는 고객재산의 인출을 위임받지 아니하며, 고객 계좌에서 수수료를 인출하지 아니한다. 투자일임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므로 부가가치세를 더하지 아니한다.

⑨ 고객이 기한 내에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회사는 30일의 기간을 정하여 현금 납부 또는 계좌 내 재산의 처분에 의한 수수료 마련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도 고객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는 미납 수수료에 해당하는 고객 계좌 내 재산을 고객과 합의한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다만 처분대금의 회사 계좌로의 이체·납부는 고객이 직접 한다. 미납 수수료에는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실제 납부일까지 [별지 1]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⑩ 중도해지수수료는 없다. 계약이 종료 또는 해지되는 경우 종료·해지일까지의 성과수수료만 정산한다. 각 정산일에 확정된 성과수수료는 그 이후의 손실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산 오류의 정정, 법령상 반환의무,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에 따른 손해배상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투자일임재산의 평가)**

① 투자일임재산 평가액은 계좌 내 금융투자상품 평가액, 현금·예수금, 지급이 확정되었으나 아직 입금되지 아니한 배당금 등을 더하고, 계좌에 반영되어야 할 미결제 채무를 뺀 금액으로 한다. 이미 예수금에 들어 있는 배당금이나 매도대금은 다시 더하지 아니한다. 모든 평가일에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② 금융투자상품은 기준일 현재 주된 거래소의 정규시장 종가(휴장일인 경우 직전 거래일 종가)로 평가한다. 거래정지·상장폐지 등으로 시가를 객관적으로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고객이 거래하는 증권회사가 기준일에 산출·표시하는 평가금액을 우선 적용하고, 그 평가금액이 없거나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그 기준 및 결과를 고객에게 통지한다. 시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객과 합의한 금액으로 한다.

③ 배당금은 원천징수세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고객의 개별적인 종합소득세 신고 등에 따른 추가 세액이나 환급액은 반영하지 아니한다. 운용개시일 이전에 권리가 확정된 배당금 등은 입금 시기와 관계없이 추가 입금(원금)으로 보고, 운용개시일 이후에 확정된 배당금 등은 투자수익으로 본다. 권리와 현금이 중복 반영되지 않도록 한다.

④ 보고서에 표시하는 투자수익률은 입출금 시점을 반영하여 계산하며, 성과수수료 차감 전 수익률과 확정된 성과수수료 반영 후 수익률을 구분하여 표시한다. 위탁매매수수료와 세금은 이미 계좌 평가액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다시 빼지 아니한다.

**제6조 (회사의 의무와 업무기준)**

① 회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투자일임업무를 수행하며, 전문적인 조사분석에 의한 합리적 투자의사결정, 고객의 투자목적과 위험수용도에 부합하는 포트폴리오 구축 및 위험관리, 일관성 있는 투자원칙, 고객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업무의 일반적 기준으로 한다.

② 업무는 상담 및 서비스 소개 → 투자자정보 확인 및 적합성 판단 → 계약 권유 및 설명서 교부 → 계약 체결 → 증권회사 주문권한 확인 및 운용 개시 → 분기별 투자일임보고서 교부 → 계약 종료 및 수수료 정산의 순서로 진행한다.

③ 회사는 계약 체결 전에 고객의 투자목적, 투자경험, 위험선호도, 투자예정기간, 재무상태 등을 서면으로 파악하여 이를 운용에 최대한 반영한다. 고객이 일반투자자인 경우 회사는 연 1회 이상 고객의 재무상태·투자목적 등의 변경 여부를 확인하고, 매 분기 1회 이상 변경이 있는 경우 회신하여 줄 것을 통지하며, 변경을 확인하거나 회신받은 경우 변경된 내용에 부합하도록 운용한다. 변경사항이 없는 고객이 회신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한다.

④ 고객은 자기의 투자목적, 재무상태 등에 관하여 회사의 임직원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며,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에 관한 상담은 투자운용인력이 응한다. 고객은 운용에 대하여 합리적인 제한을 두거나 특정 증권의 취득·처분 또는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회사는 계약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한다.

⑤ 회사가 고유재산으로 투자일임재산과 동일한 종목을 매매한 경우 분기별 투자일임보고서에 그 내역(종목명, 수량, 매매일, 평가액 등)을 보고하며, 회사 또는 그 이해관계인이 발행한 증권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고객의 승인을 받는다.

**제7조 (투자일임보고서)**

회사는 계약기간 동안 분기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투자일임보고서를 작성하여 고객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한다. 다만 고객이 전자우편으로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전자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

1. 투자일임재산의 운용경과 및 손익현황 2. 매매일자, 매매가격, 매매회전율 등 운용현황 3. 자산 종류별 잔액, 취득가액, 시가 및 평가손익 4. 실제 운용한 투자운용인력과 담당기간 5. 투자일임수수료의 부과 시기 및 금액 6. 기준수익률의 성과, 성과수수료 산정내역(미부과 시 그 사유)과 지급내역 7. 고유재산과의 동일종목 매매 내역, 그 밖에 관계 법령상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 (금지행위)**

회사 또는 그 임직원은 자본시장법 제9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9조, 금융투자업규정, 그 밖의 관련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관련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하며, 특히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1. 고객으로부터 투자일임재산의 예탁 또는 인출, 예탁 금융기관의 지정 또는 변경을 위임받는 행위

2. 고객에게 현금 또는 투자일임재산을 대여하거나 고객으로부터 현금 또는 투자일임재산의 보관·예탁을 받는 행위

3. 투자운용인력이 아닌 자에게 투자일임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계약으로 정한 수수료 외의 대가를 추가로 받는 행위

4. 특정 고객의 이익을 해하면서 회사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투자일임재산으로 회사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일임재산 또는 회사·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행위, 고객의 동의 없이 회사 또는 그 이해관계인이 발행한 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5. 투자일임재산을 고객별로 운용하지 아니하고 여러 고객의 재산을 집합하여 운용하는 행위. 다만 매매주문을 집합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미리 정한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공정하게 배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9조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

① 회사는 고객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이라 한다)에 따른 일반금융소비자인지 전문금융소비자인지를 확인한다. 자본시장법에 따른 일반투자자·전문투자자 구분은 별도로 확인한다.

②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인 고객에 대하여 계약 체결 전에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고객의 취득·처분 목적, 재산상황, 취득·처분 경험 등 투자자정보를 별도의 투자자정보 확인서에 따라 파악하고, 고객으로부터 서명(전자서명을 포함한다),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유지·관리하며, 확인받은 내용 및 분류된 투자자성향을 고객에게 지체 없이 제공한다. 회사는 고객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계약의 체결을 권유하지 아니한다. 투자자정보는 원칙적으로 고객 본인으로부터 파악하되, 대리인이 실명확인증표 및 위임장 등 대리권을 증빙하는 경우 대리인으로부터 파악할 수 있다.

| | |
|---|---|
| 투자자성향 | □ 매우높은 위험선호형 □ 높은 위험선호형 □ 다소높은 위험선호형 □ 보통 위험선호형 □ 낮은 위험선호형 □ 매우낮은 위험선호형 |

③ 회사는 고객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및 고객이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금소법 제19조에 따라 투자성 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위험등급, 고객이 부담하는 수수료, 계약의 해제·해지, 예상 손실,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 절차, 그 밖에 관련 법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용어로 설명하고, 설명에 필요한 설명서를 제공하며, 설명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하였음을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는다. 회사는 중요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누락하지 아니하며, 설명하였음에도 고객이 주요 손익구조 및 손실위험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권유를 계속하지 아니한다.

④ 회사는 일임업무 수행 과정에서 보수 및 그 결정기준, 보수 외에 추가로 금전 등을 요구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금융상품의 취득·처분에 따른 손실은 고객에게 귀속된다는 사실, 담당 임직원의 성명·직책·연락처를 고객에게 알린다.

⑤ 설명 및 이해에 관한 확인

(고객) 1. 설명서를 교부받았음 2. 상품의 내용, 핵심 투자위험, 원금손실 가능성(예금자보호법상 보호상품 아님), 수수료(허들레이트 연 6%는 보장수익률이 아니며 초과수익의 20%를 HWM 방식으로 계산),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 3. 본 상품의 투자위험은 6등급 중 1등급(매우 높은 위험)으로 최대 원금 전액손실이 가능함을 충분히 이해하였음
고객 성명: _____ (서명 또는 인) 확인일: 년 월 일

(설명한 임직원) 고객정보와 적합성을 확인하고 상품의 위험도, 최대 손실 가능성, 수수료 등을 충분히 설명하였으며, 고객이 해당 내용을 이해하였음을 확인하였음
임직원 성명: _____ (서명 또는 인)

### 제10조 (비밀유지 및 통지)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고객의 투자일임재산 내용, 관리상황, 신상내용 등을 비밀로 유지하며, 법령에서 허용·요구하거나 고객이 동의한 경우 외에는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다. 이 의무는 계약 종료 후에도 효력을 갖는다. 회사는 업무상 필요한 경우 투자일임계좌에 관한 자료를 계좌개설 영업점에 요청할 수 있다. 개인정보·개인신용정보의 처리에 필요한 동의는 별도 서류로 받는다. 고객은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투자일임서비스를 제3자와 공동으로 이용하지 못한다.

② 고객은 거래증권회사 및 계좌번호, 주소·연락처, 그 밖에 투자일임서비스 제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통지한다. 회사는 [별지 1]에 기재된 주소·연락처(고객이 달리 지정한 경우 그 장소)에 문서, 전자우편 또는 전화로 통지한다.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변경내용을 통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제11조 (고객재산의 인출 및 운용결과의 귀속)

① 고객은 투자일임재산을 인출하고자 하는 경우 3영업일 이전에 회사에 통지하며, 인출을 회사에 위탁할 수 없다. 전액을 인출하면서 계약을 종료하는 경우에는 인출 직전의 평가액을 최종 평가액으로 하여 정산한다.

② 정당한 운용의 결과로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은 고객에게 귀속되며, 회사는 손실을 보전하거나 이익을 보장하지 아니한다. 다만 회사의 고의·과실, 계약위반 또는 관계 법령 위반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가 부담하는 책임은 이에 의하여 제한되지 아니한다.

③ 회사는 자본시장법 및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12조 (계약기간 및 갱신)

① 계약체결일은 당사자가 실제 서명한 날로 하고, 계약기간과 실제 운용개시일은 [별지 1]에 기재한다. 운용개시일 이전의 기간은 수수료 산정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회사는 계약서류 교부, 운용재산 확인 및 증권회사 주문권한 설정을 확인한 후 운용을 개시한다.

② 회사는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고객에게 계약종료일을 통지하며, 계약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고객은 계약종료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종전 계약과 같은 기간 및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함께 통지한다. 고객이 계약종료일까지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은 같은 기간 및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갱신 시 HWM은 초기화하지 아니하고 종전 계약에서 정한 다음 기간 HWM을 이어받는다.

**제13조 (계약의 변경 및 해지)**

① 고객은 계약기간 중에도 서면 또는 회사와 합의한 방법으로 계약을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회사는 고객계좌에 가압류·압류절차가 개시되거나 질권 등 담보권이 설정되어 운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 또는 운용에 꼭 필요한 고객정보를 반복하여 확인할 수 없어 적합한 운용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그 사유를 알리고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고객이 그 기간 내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시정이 명백히 불가능하거나 위반의 정도가 중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사유를 명시하여 즉시 해지할 수 있다. 수수료 미납에 따른 해지는 제4조제9항에 따른다.

③ 계약이 해지되면 회사는 고객의 명시적 지시에 따른 정리거래와 기존 거래의 결제를 제외한 일임운용을 중단하고 증권회사 주문권한 해제에 협조한다. 고객재산은 고객 명의 계좌에 그대로 있으므로 회사가 이를 반환하는 절차는 없다. 보유주식을 매도할지 그대로 둘지는 제15조 및 고객의 지시에 따르며, 회사가 임의로 현금화하지 아니한다. 해지는 해지일 이전에 실행된 거래 및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4조 (약관의 변경)**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을 시행일 1개월 전에 영업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한다. 다만 관계 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제·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②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경우 회사는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시행일 1개월 전까지 "고객은 약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시행일 전 영업일까지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통지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거나 고객이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한 경우에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약관을 영업점에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고객이 확인·출력할 수 있도록 하며, 고객이 요구하는 경우 이를 교부한다.

**제15조 (대리인 및 계약 개시·종료 시의 재산 형태)**

① 대리인이 계약 체결, 서류 수령, 통지 수령 또는 운용 관련 요청을 하는 경우 회사는 위임장과 실명확인증표 등으로 대리권의 범위를 확인하며, 대리인은 위임받은 범위에서만 행위할 수 있다. 대리인을 선임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회사의 고객에 대한 법령상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한다.

② 운용 개시 및 종료 시점의 투자일임재산의 형태는 현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고객과 회사가 합의한 경우 공정한 시세가 있는 자산을 그대로 보유할 수 있다. 현금화가 필요한 경우 고객의 지시에 따라 매도하며, 거래정지 등으로 즉시 현금화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그 내용과 처리방법을 고객에게 안내한다.

### 제16조 (투자운용인력의 선정과 변경)

① 고객은 회사의 투자운용인력 중에서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을 담당할 투자운용인력을 선임하며, 회사는 해당 투자운용인력의 주요경력 등을 서면으로 고객에게 제공한다. 본 계약의 담당 투자운용인력은 [별지 1]에 기재된 사람으로 한다. 고객은 회사에 투자운용인력의 제재내역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고객이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을 원하는 경우 서면 또는 전화로 회사에 요청한다. 회사가 투자운용인력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될 인력의 주요경력 등을 제공하고 확인 가능한 방법으로 고객의 사전 동의를 얻는다. 다만 사망·퇴직 등으로 사전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변경 후 지체 없이 "고객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통지하고, 고객이 30일 이내에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고객은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재변경을 요청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제17조 (임직원 및 대주주에 관한 사항)

① 회사의 임원 및 투자운용인력은 다음과 같다.

| 성명 | 직위 | 주요경력 | 투자운용인력 |
|---|---|---|---|
| 이정준 | 대표이사 (투자일임부서) | 現 ㈜꿈꾸는투자일임 대표이사 2026.9.3.~ (고객별 투자권유 및 투자일임 수행, 투자자산운용사) / 同社 고유자산운용부서 2025.12.10.~2026.9.2.<br>㈜더파운더즈 북미마케팅1팀 Sr.매니저 2024.2.~2025.9. / ㈜젭 사업팀 2022.10.~2023.7. / ㈜슈퍼캣 메타버스팀 2022.2.~2022.9. / ㈜퓨처플레이 Investment Team 2020.10.~2022.2. | 해당 (Y) |
| 이슬기 | 사내이사 (고유자산운용부서) | 現 ㈜꿈꾸는투자일임 사내이사 2026.8.5.~ (고유자산 운용, 투자자산운용사)<br>하양서울파티마치과의원 경영지원 사무장 2018.5.~2026.7. | 해당 (Y)<br>고유자산 담당 |
| 조준혁 | 기타비상무이사 | 現 ㈜꿈꾸는투자일임 기타비상무이사 2026.8.5.~ (이사회 참석 및 주요 경영사항 의사결정 참여)<br>하양서울파티마치과의원 원장 2018.5.~현재 | — |
| 이성재 | 감사 (준법감시부서) | 現 ㈜꿈꾸는투자일임 감사 2026.4.21.~ (회계 및 업무 감사, 준법감시 담당)<br>에이에이씨티유한회사 조업부 차장 2019.5.~2021.4. | — |

② 회사의 주주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주주명 | 주식의 종류 | 주식수 | 지분율(의결권) | 비고 |
|---|---|---|---|---|
| 조준혁 | 보통주 | 680,000주 | 37.78% | 최대주주 |
| 조가연 | 보통주 | 410,000주 | 22.78% |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

| | | | | |
|---|---|---|---|---|
| 조형민 | 보통주 | 410,000주 | 22.78% |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
| 이슬기 | 보통주 | 300,000주 | 16.67% |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
| 합계 | 보통주 | 1,800,000주 | 100.00% | |

③ 회사, 그 임직원 및 대주주는 과거에 내부자거래, 시세조종, 부정거래행위 등 위법행위로 형사제재를 받았거나 금융위원회로부터 자본시장법 제42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다.

**제18조 (면책)**

회사는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고객의 운용지시를 포함한다)로 인한 손실, 서류 및 인감(또는 서명)을 상당한 주의로 대조하여 업무를 처리하였음에도 위조·도용 등 사고로 발생한 손해, 천재지변·사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계약 불이행 또는 지연에 대하여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9조 (분쟁조정 및 관할법원)**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0조 (기타)**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자본시장법, 금소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르며, 관계 법령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고객과 회사가 합의하여 정하거나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이 우선 적용된다. [별지 1]과 [별지 2]는 이 계약의 일부이며, 고객에게 본문과 함께 교부한다.

고객과 회사는 본문 및 [별지 1·2]를 확인하고 이 계약의 증거로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계약체결일:  년  월  일

| "고객" | "회사" |
|---|---|
| 주소: |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93길 40, 나라키움 역삼에이빌딩 6층 610호(역삼동) |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110111-0930960 |
| 연락처: | 연락처: 02-567-6653 |
| 이메일: | 이메일: dreaming@dreaming.im |
| 성명: (서명 또는 인) | 상호: 주식회사 꿈꾸는투자일임 |
| 대리인: (서명 또는 인) | 대표이사: 이 정 준 (인) |

# [별지 1] 투자일임계약에 관한 사항 (세부계약조건)

| | |
|---|---|
| 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 |
| 실제 운용개시일 | 년 월 일 (회사·고객 확인)<br>운용개시일 평가액: 금 원정 (₩ ) |
| 계약금액 | 금 원정 (₩ ) |
| 운용대상 |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 국내주식 (제2조제2항). 매매 대기자금은 현금·예수금으로 보유. |
| 기본수수료 | 없음 (성과수수료형 계약) |
| 성과수수료 | 허들레이트(기준수익률): 연 6% (복리 기간환산, 보장수익률 아님)<br>성과수수료율: 초과수익의 20% (10,000원 미만 절사, 부가가치세 면세)<br>하이워터마크(HWM) 방식 적용<br>정산 및 지급: 매년 6월 30일 및 최종정산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후취하며, 청구서와 산출내역을 받은 날부터 7영업일 이내에 아래 수수료 입금계좌로 납부한다.<br>산정방식: 본 계약 제4조 및 [별지 2]에 따른다. |
| | |
| 중도해지수수료 | 없음 (0%) |
| 연체이자 | 연 12% (제4조제9항) |
| 수수료 지급방법 | 수수료 입금계좌: (은행 / 계좌번호)<br>예금주: 주식회사 꿈꾸는투자일임<br>고객이 직접 납부하며, 회사는 고객계좌에서 인출하지 않는다. |
| 투자일임재산 예탁 증권회사 및 계좌 | 거래증권회사명:<br>계좌번호 및 계좌명:<br>주문담당자 및 연락처:<br>주문담당자 E-mail: |
| 고객에 대한 통지장소 | 주소:<br>전화:<br>E-mail:<br>투자실적 보고 방식: □ 직접교부 □ 우편 □ E-mail(전자우편 수령 동의) □ 기타 ( ) |
| 회사에 대한 통지장소 |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93길 40, 나라키움 역삼에이빌딩 6층 610호(역삼동)<br>전화: 02-567-6653 E-mail: dreaming@dreaming.im |
| 담당 투자운용인력 | 성명: 직급:<br>주요경력: 제17조제1항 참조 |

| | |
|---|---|
| 기타사항 / 특약 | |

# [별지 2] 성과수수료 계산 기준

제4조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계약의 일부입니다. 수수료율과 정산일은 [별지 1]에 따릅니다.

**1. 계산 순서**

① 기간 초 HWM: 최초 정산기간은 운용개시일 평가액, 이후는 직전 정산에서 정한 "다음 기간 HWM".

② 기준금액 = 기간 초 HWM × (1+6%)^(정산기간 일수÷연 기준일수) + Σ 입금액 × (1+6%)^(입금일부터 정산일까지 일수÷연 기준일수) − Σ 출금액 × (1+6%)^(출금일부터 정산일까지 일수÷연 기준일수)

③ 초과수익 = 정산일 평가액 − 기준금액 (0보다 작으면 0)

④ 성과수수료 = 초과수익 × 20%, 10,000원 미만 절사. 당기 운용손익(정산일 평가액 − 기간 초 평가액 − 입금합계 + 출금합계)이 0 이하이면 0.

⑤ 다음 기간 HWM = max(입출금 조정 HWM, 정산일 평가액). 입출금 조정 HWM은 기간 초 HWM에 입금액을 더하고, 출금이 있으면 출금 직전 평가액에 대한 출금 비율만큼 줄인 값이다.

※ 연 기준일수는 정산기간에 2월 29일이 있으면 366일, 없으면 365일. 일수는 양쪽 날을 포함한다. 운용개시일 평가액에 이미 포함된 최초 납입금은 입금액에 다시 넣지 않는다.

**2. 입출금·해지 시 처리**

• 배당금·매도대금 등 계좌 안에서의 이동은 입출금이 아니다. 고객이 계좌 밖으로 돈을 넣거나 뺀 것만 입출금이다.

• 일부 출금이 있어도 별도의 정산일을 만들지 않고 약정 정산일에 계산한다.

• 전액을 인출하면서 계약을 종료하는 경우, 인출 직전 평가액을 정산일 평가액으로 하고 그 인출액은 출금액에 넣지 않는다.

• 수수료 청구서에는 기간 초 HWM, 기간 초·정산일 평가액, 각 입출금의 날짜·금액, 기준금액, 초과수익, 성과수수료, 다음 기간 HWM을 표시한다.

**3. 계산 예시 (모두 가정이며 수익을 보장하지 않음)**

| 사례 | 가정 | 결과 |
|---|---|---|
| 1년, 입출금 없음 | HWM 1억원, 정산일 평가액 1억2,000만원 | 기준금액 1억600만원, 초과수익 1,400만원, 수수료 280만원. 다음 HWM 1억2,000만원 |
| 다음 해, 허들 미달 | HWM 1억2,000만원, 평가액 1억2,500만원 | 기준금액 1억2,720만원 > 평가액이므로 수수료 0. 다음 HWM은 1억2,500만원(평가액이 더 높으므로 상향) |
| 첫 정산기간 (1년 미만) | 2026.10.1 개시 ~ 2027.6.30 (273일). HWM 1억원, 평가액 1억2,000만원 | 기간 허들 4.4546%. 기준금액 104,454,559원, 초과수익 15,545,441원, 수수료 310만원 |
| 기간 중 추가 입금 | 위 첫 기간 중 2027.1.1에 5,000만원 | 기준금액 155,920,384원, 수수료 281만원. 입 |

| | | |
|---|---|---|
| | 입금(잔여 181일). 평가액 1억7,000만원 | 출금 조정 HWM 1억5,000만원, 다음 HWM 1억7,000만원 |
| 손실 중 일부 출금 | 위 첫 기간 중 2027.5.1에 직전 평가액 8,000만원에서 4,000만원 출금(잔여 61일). 평가액 5,000만원 | 운용손익 −1,000만원이므로 수수료 0. 입출금 조정 HWM 1억×(1−0.5)=5,000만원, 다음 HWM 5,000만원 |

예시의 기준금액은 표시용 반올림 값이며, 실제 수수료는 반올림 전 값으로 계산한 뒤 마지막에 10,000원 미만을 절사합니다.

**[계약서류 수령 확인] (회사 보관본에만 기재)**

본인은 투자일임계약서 본문 및 별지 1·2가 포함된 고객 보관본 1부, 투자일임계약 권유문서(서면자료·설명서) 및 투자자정보 확인서의 사본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수령일:  년  월  일  수령방법: □ 서면 □ 전자문서

고객 성명: _____ (서명 또는 인)